

1. 개정이유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단계 금강수계 총량관리계획 수립 및 오염총량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구역」 고시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무심A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을 삭제하고, 해당 유역을 미호B 단위유역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으로 편입

나.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청원군’을 ‘청주시’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12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담당주무관 : 이해경, 전화 : 044-201-7012, 팩스 : 044-201-7000)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환경부공고제2020-667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에 관한 환경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 등재된 화학물질 관련, 제공하는 정보의 확대를 위해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847호, 2020. 7. 14. 공포)됨에 따라 스톡홀름협약 등재물질의 상세정보를 담은 고시를 제정하고, 이 협약에 2019년 새롭게 등재된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 및 관련 화학물” 및 “디코폴”을 국내 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로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wldud@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2, 전자우편 wldud@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77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실화를 통하여 제도의 실효성 향상시키고자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현실화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의 활용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간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지하시설물의 범위에 송유관을 추가하여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하정보 갱신을 위해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지하매설물 준공도면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해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시설물의 범위에 송유관을 추가(안 제2조제14호 신설)

나. 지하정보 갱신을 위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지하매설물 준공도면 등으로 명확히 규정(안 제33조제2항)

다.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한 협의체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34조제3항 및 제4항부터 제8항 신설)

라.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에서 위촉일 기준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하개발 관련 기관·단체에서 퇴직한 후 3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함(안 제38조제2항)

마.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에 지하안전정보에 관한 통계연보 제작·발간을 신설함(안 제42조제1항제5호 신설)

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